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(無記名式)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2022년 12월 1일까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 3. ~ 6. 7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(無記名式) 선불카드의 경우: 30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)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	제7조의2(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(無記名式) 선불카드의 경우: 300만원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,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(無記名式) 선불카드의 경우: 300만원	<u><삭제></u>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992